

수원지방법원 2021. 2. 10 선고 2020가합1954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

담당변호사 홍원석

원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B

피고1.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21. 1. 20.

판결 선고2021. 2. 10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제1토지 내지 제2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□, ▢, △, ○, ×, ☆, ♡, ♣, ♠, 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84㎡, ▢, ☆, ▽1, ♣, ◇, ♠1, ▢1, 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83㎡, △1, ○1, ×1, ☆1, ♡1, ♣1, ♠1, ◇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라)부분 83㎡, ▽2, ♣, ◇, ♠2, ▢2, △2, ○2, ▽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마)부분 83㎡, ×2, ☆2, 72, ♣2, ▢2, ☆2, 13, ♣3, ×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바)부분 83㎡, ◇3, ♠, ▢3, △3, ○3, ×3, ☆3, ◇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사)부분 83㎡, 3, ♣3, 3, ☆3, 74, ♣, ◇4, 4, 4, 4, ♡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아)부분 65㎡, ▢12, ☆12, 13, 13, 13, 13, 13, 13, 013, ▢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자1)부분 63㎡, ×13,

ㄷ13, 13, ㄷ13, ㄷ13, ㅎ13, 14, ㄴ14, ㄷ14, ㄹ14, ㅈ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차1)부분 65㎡, 14, 14, 14, 014, ㅈ14, ㄷ14, 14, 14, 14, 14,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카1)부분 64㎡, 15, 15, ㄷ15, ㄹ15, 15, ㅂ15, ㅅ15, 015, ㅈ15, ㄷ15, ㄴ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타1)부분 65㎡, 15, ㄷ15, ㄷ15, ㅎ15, ㄴ16, ㄴ16, ㄷ16, 16, 16, 16,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파1)부분 65㎡의 각 지상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,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
나. 피고 D는 별지2 목록 기재 제3토지 내지 제5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ㅅ16, ○16, ㅈ16, ㄷ16, 16, ㄷ16, ㄷ16, ㅎ16, ㅅ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하1)부분 187㎡, 17, 17, ㄷ17, ㄹ17, ㅁ17, ㅂ17, ㅅ17, 017, ㄴ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2)부분 188㎡, ㅈ17, ㄷ17, ㅋ17, ㄷ17, ㄷ17, ㅎ17, ㅈ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2)부분 192㎡, 18, 18, 18, 18, □18, 18, 18, 18,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2)부분 186㎡, ㅈ18, ㄷ18, 18, 18, 18, 18, 19, ㄴ19, ㅈ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라2)부분 187㎡, ㄷ19, 219, ㅁ19, ㅂ19, 19, 019, ㅈ19, ㄷ19, ㄷ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마2)부분 186㎡, 19, 19, ㄷ19, ㅎ19, 20, ㄴ20, 20, 20, 20, ㅂ20, 20, 20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바2)부분 109㎡, 20, ㄷ20, 20, 20, 20, ㅎ20, 21, ㄴ21, ㄷ21, 21, □21, ㅂ21, 21, 021, ㅈ21, ㄷ21, ㅈ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사2)부분 122㎡의 각 지상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,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
다. 피고 E은 별지2 목록 기재 제6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ㄴ, ㄴ, ㄷ, ㄹ, 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89㎡의 지상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,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C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)

나. 피고 D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)

다. 피고 E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)

재판장판사조정웅

판사윤성진

판사이지연

별지